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98 발의연월일: 2022. 2. 8.

발 의 자:김철민·도종환·민형배

박찬대 • 안민석 • 오영환

유기홍 • 윤준병 • 이병훈

이수진 • 이원욱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따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하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의 증가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부담을 주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 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이하 "법정의무교육"이라 한다)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
	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
	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
	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이
	하 "법정의무교육"이라 한다)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